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재옥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924

발의연월일: 2025. 4. 17.

발 의 자: 윤재옥 • 이인선 • 김 건

김기웅 · 김태호 · 최수진

정성국 • 이종배 • 엄태영

백종헌 • 이주영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자동차등록원부 비치·관리, 신규등록, 등록번호판 부착·봉인, 이전·말소등록, 등록번호 부여, 임시운행 허가 등의 업무를 시·도지사의 권한과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저출생, 수도권 인구집중, 코로나19 현상 등으로 인해 행정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적시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.

이에 자동차등록 등에 관한 권한과 사무를 시·도지사에서 시장· 군수·구청장으로 일괄 이양하는 한편 이에 연계된 전자적 방법 등록 에 관한 사무의 위탁 주체 또한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변경함으로 써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,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7조제1항 등).

법률 제 호
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"시·도지사는"을 각각 "시장·군수·구청장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시·도지사"를 "시장·군수·구청장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"시·도지사는"을 "시장·군수·구청장은"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시·도지사"를 "시장·군수·구청장"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"시·도지사는"을 각각 "시장·군수·구청장은"으로 한다.

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시·도지사는"을 "시장·군수·구청장은" 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본문 중 "시·도지사는"을 "시장·군수·구청장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"시·도지사"를 각각 "시장·군수·구청장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"시·도지사"를 "시장·군수·구청장"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준용한다"를 "준용하며, 이 경우 "자동차등록번호판"은 "외부장치용 자동차등록번호판"으로, "등록번호판"은 "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"으로 본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 중 "시·도지사는"을 "시장·군수·구청장은"으로

한다.

제11조제1항 본문 중 "시·도지사"를 "시장·군수·구청장"으로 한다. 제12조제1항 중 "시·도지사"를 "시장·군수·구청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시·도지사는"을 "시장·군수·구청장은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"시·도지사는"을 "시장·군수·구청장은"으로 한다. 제12조의2의 제목 중 "등록원부 발급신청"을 "등록원부 열람신청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"해당 자동차의 이전등록이 있는 경우 시·도지사에게 등록원부 또는 초본을 열람 또는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시·도지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"를 "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원부의 열람이나 초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을 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등록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록원부 초본을 발급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시·도지사"를 "시장·군수· 구청장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 후단 중 "시·도지사가"를 "시장· 군수·구청장이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 4항 본문,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"시·도지사는"을 각각 "시장·군수·구청장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 분, 같은 조 제8항 전단 및 같은 조 제9항 중 "시·도지사"를 각각 "시장·군수·구청장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1항 중 "시·도지사가"를 "시장·군수·구청장이"로, "시·도지사에게"를 "시장·군수·구청장 에게"로 한다.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시·도지사는"을 "시장·군수·구청장은" 으로 한다.

제14조의2제2항 중 "시·도지사"를 "시장·군수·구청장"으로 한다. 제14조의3 중 "시·도지사는"을 "시장·군수·구청장은"으로 한다. 제16조 중 "시·도지사는"을 "시장·군수·구청장은"으로 한다.

제27조제1항 본문 중 "시·도지사"를 "시장·군수·구청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"시·도지사는"을 "시장·군수·구청장은"으로 한다.

제28조제1항 중 "시·도지사가"를 "시장·군수·구청장이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"시·도지사는"을 각각 "시장·군수·구청장은"으로 한다.

제77조제7항 중 "시·도지사는"을 "시장·군수·구청장은"으로 한다. 제87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"특별자치시장·시장"을 각각 "시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보고,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·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·신고나 그밖의 행위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자동차등록원부) ① <u>시·도</u>	제7조(자동차등록원부) ① <u>시장ㆍ</u>
지사는 등록원부를 비치(備置)	<u> 군수 • 구청장은</u>
• 관리하여야 한다.	
② <u>시·도지사는</u> 등록원부의	② <u>시장·군수·구청장은</u>
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	
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	
에 따라 등록원부를 복구하기	
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	
한다.	
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·도	③사장・
지사는 등록원부 및 그 기재	<u> 군수 · 구청장은</u>
사항의 멸실(滅失) • 훼손이나	
그 밖의 부정한 유출 등을 방	
지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하여	
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	
	.
④ 등록원부의 열람이나 그 등	4
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으려는	
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	
바에 따라 <u>시·도지사</u> 에게 신	<u>시장·군수·구청</u>
청하여야 한다.	<u>장</u>
⑤ <u>시·도지사는</u> 제4항에 따라	⑤ <u>시장·군수·구청장은</u>
등록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	

그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 다.

⑥ (생략)

제8조(신규등록) ① 신규로 자동 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시 · 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 등록(이하 "신규등록"이라 한 다)을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 우 시・도지사는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구매자가 자동차를 제작・ 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(이들로 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 은 자를 포함하며, 이하 "자동 차제작·판매자등"이라 한다) 로부터 제8조의2에 따른 고지 를 받았다는 사실을 국토교통 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 규등록을 신청하는 자에게 확 인하여야 한다.

<u>.</u>
⑥ (현행과 같음)
제8조(신규등록) ①
지자 . 그스 . 그치자
<u>시장・군수・구청장</u>
<u>시장·군수·구청장은</u>

- 1. 2. (생 략)
- ② <u>시·도지사는</u> 신규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- ③ ④ (생 략)
- 제9조(신규등록의 거부) <u>시·도지</u> <u>사는</u>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등 록을 거부하여야 한다.
 - 1. ~ 6. (생략)
- 제10조(자동차등록번호판) ① 시 ·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 번호판(이하 "등록번호판"이라 한다)을 붙여야 한다. 다만, 자 동차 소유자 또는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 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려는 경우 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직접 부착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붙인 등록번

② <u>시장·군수·구청장은</u>
③・④ (현행과 같음)
제9조(신규등록의 거부) <u>시장·군</u>
<u>수·구청장은</u>
1. ~ 6.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자동차등록번호판) ① 시
<u> 장・군수・구청장은</u>
•
- .
②

1 • 9 (혀해과 간은)

호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떼지 못한다.

- 1. <u>시·도지사</u>의 허가를 받은 경우
- 2. · 3. (생략)
- ③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 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 렵게 된 경우에는 <u>시·도지사</u> 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 의 부착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 다.
- ④ ~ ⑥ (생 략)
- ⑦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붙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시·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한다.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.

 1. <u>시장·군수·구청장</u>
2.·3. (현행과 같음) ③
시장·군수· <u>시장·군수·</u> 구청장
<u> </u>
 ④ ~ ⑥ (현행과 같음) ⑦
시장·군수 청장
<u>준용하며, 이 경우 "자동</u>
차등록번호판"은 "외부장치용
자동차등록번호판"으로, "등록

⑧ <u>시·도지사는</u> 등록번호판을 회수한 경우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 다.

⑨ (생략)

제11조(변경등록) ① 자동차 소유 자는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(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 및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)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변경등록(이하"변경등록"이라 한다)을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(생략)

제12조(이전등록) ① 등록된 자동 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시·도</u> <u>지사</u>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 전등록(이하 "이전등록"이라 한 다)을 신청하여야 한다.

<u>번호판"은 "외무상지용 등독</u>	<u>번</u>
호판"으로 본다.	
® <u>시장·군수·구청장은</u>	
⑨ (현행과 같음)	
제11조(변경등록) ①	
<u>시장·군수·구</u>	<u>청</u>
<u> 장</u>	
② (현행과 같음)	
제12조(이전등록) ①	
시장	•
<u> 군수 • 구청장</u>	

- ② ~ ④ (생 략)
- 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 청을 받은 <u>시·도지사는</u>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 록을 수리(受理)하여야 한다.
- ⑥ 시·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제 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 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 리(受理)하여야 한다.

⑦ (생략)

- 제12조의2(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에 기재된 발급신청)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은 해당 자동차의 이전등록이 있는 경우 시· 도지사에게 등록원부 또는 초본을 열람 또는 발급 신청을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시·도지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제13조(말소등록) ① 자동차 소유 자(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 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⑤
<u>시장·군수·구청장</u>
<u> </u>
⑥ <u>시장·군수·구청장은</u>
<u>.</u>
⑦ (현행과 같음)
⑦ (현행과 같음) 제12조의2(이해관계인의 <u>등록원</u>
제12조의2(이해관계인의 <u>등록원</u>
제12조의2(이해관계인의 <u>등록원</u> 부 열람신청 등)
제12조의2(이해관계인의 <u>등록원</u> <u>부 열람신청 등</u>) <u>시장・군</u>
제12조의2(이해관계인의 <u>등록원</u> <u>부 열람신청 등</u>) <u>시장・군</u> 수・구청장에게 등록원부의 열
제12조의2(이해관계인의 <u>등록원</u> 부 열람신청 등) <u>시장·군</u> 수·구청장에게 등록원부의 열 람이나 초본의 발급을 신청할
제12조의2(이해관계인의 <u>등록원</u> 부 열람신청 등)시장·군 수·구청장에게 등록원부의 열 람이나 초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을 받은 시장·
제12조의2(이해관계인의 등록원 부 열람신청 등)시장·군 시장·군 수·구청장에게 등록원부의 열 람이나 초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을 받은 시장· 군수·구청장은 등록원부를 열
제12조의2(이해관계인의 등록원 부 열람신청 등)시장·군 수·구청장에게 등록원부의 열 람이나 초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을 받은 시장· 군수·구청장은 등록원부를 열 람하게 하거나 등록원부 초본
제12조의2(이해관계인의 등록원 부 열람신청 등)시장·군 수·구청장에게 등록원부의 열 람이나 초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을 받은 시장· 군수·구청장은 등록원부를 열 람하게 하거나 등록원부 초본 을 발급하여야 한다.

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,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시 ·도지사에게 말소등록(이하"말소등록"이라 한다)을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.

- 1. ~ 6. (생략)
- 7.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 에도 환가(換價) 절차 등 후 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. 이 경우 시·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(囑託)한 법원 또는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.

<u>시장</u>
<u>・군수・구청장</u>
1. ~ 6. (현행과 같음)
7
<u>시장·군수·구청장</u>
<u>o]</u>

- 8. (생략)
- ② (생 략)
- ③ <u>시·도지사는</u>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.
- 1. ~ 6. (생략)
- ④ 시·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그 1개월 전까지 등록원부에 적힌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그 자동차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자동차의 말소등록에 동의한 경우와 제1항제3호·제5호 또는 제3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⑤ 시·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직권으로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하 여 온 자에게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

·
8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③ <u>시장·군수·구청장은</u>
· 1. ~ 6. (현행과 같음)
④ <u>시장·군수·구청장은</u>
⑤ <u>시장·군수·구청장은</u>
·,

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자동차 의 자동차등록증·등록번호판 을 반납하여야 한다.

- ⑥ <u>시·도지사는</u>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하는 경 우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한 후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 록증·등록번호판을 영치(領置) 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.
- ⑦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.

1. · 2. (생략)

8 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 록을 신청한 자(자동차소유자 가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제2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)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시·</u> 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 를 신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자동차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

· ⑥ 시장·군수·구청장은
<u> </u>
⑦
<u>시장·군수·구청장</u>
1.·2. (현행과 같음)
(8)
시장·군
<u>수·구청장</u>

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거나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 할 수 있다.

⑨ 말소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<u>시·</u> 도지사에게 자동차 말소사실증 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.

① (생략)

① 시·도지사가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 또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 수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가 시·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.

제14조(압류등록) 시·도지사는 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여야한다.

1. ~ 3. (생 략)

9
시장
<u>・군수・구청장</u>
 ① (현행과 같음) ① <u>시장·군수·구청장이</u>
시장·군수·구 <u>청장에게</u>
제14조(압류등록) <u>시장·군수·구</u> <u>청장은</u>
 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14조의2(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제14조의2(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) ① (생 략) 사무의 처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압류등록 해제 조치를 한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 록 촉탁기관 및 시·도지사에 -----시장·군수· 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. 구청장-----제14조의3(압류등록의 해제) 제14 제14조의3(압류등록의 해제) ----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 은 시・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 --시장·군수·구청장은-----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압류등록을 해 제하여야 한다. 제16조(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) 제16조(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) 시 · 도지사는 자동차를 신규등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-----록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 록번호(이하 "등록번호"라 한 다)를 부여하고,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등록번호 를 변경하여 부여한다. 제27조(임시운행의 허가) ① 자동 제27조(임시운행의 허가) ① ----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

-----시장·군수·구

통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의

임시운행허가(이하 "임시운행 허가"라 한다)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· 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 는 허가대상, 고장감지 및 경고 장치, 기능해제장치, 운행구역, 운전자 준수 사항 등과 관련하 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 국토교 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 아야 한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 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의 신청 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급하 여야 한다. 다만, 수출목적으로 운행구간을 정하여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1일로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임시운 행허가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 고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이를 발급하지 아 니할 수 있다.

③ ~ ⑦ (생 략)

<u>청장</u>
<u>.</u>
② <u>시장</u>
<u>· 군수 · 구청장은</u>

제28조(자동차 등록에 대한 이의 7 신청 특례) ① <u>시·도지사가</u> 수행한 자동차 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언제든지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- ② <u>시·도지사는</u>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고 이유가 있다 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.
- ③ <u>시·도지사는</u> 제2항에 따른 시정을 하거나 이의신청이 이 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 체 없이 그 뜻을 신청인과 등 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.
- ④ (생 략)

제77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 ~ ⑥ (생 략)

① 시·도지사는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제7조부터 제8조까지, 제9조부터 제12조까지, 제12조의2. 제13조, 제14조, 제14조의3, 제16조

제28조(자동차 등록에 대한 이의
신청 특례) ① <u>시장·군수·구</u>
<u>청장이</u>
<u>.</u>
② <u>시장·군수·구청장은</u>
,
③ <u>시장·군수·구청장은</u>
④ (현행과 같음)
제77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
~ ⑥ (현행과 같음)
⑦ <u>시장·군수·구청장은</u>

및 제27조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.

⑧ ~ 12 (생 략)

제87조(범칙금의 납부) ① 제86조에 따라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시·도지사,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건수·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할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이내에 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납부 기간 이내에 시·도지사,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이의를제기할 수 있다.

8 ~ 12 (현행과 같음) 제87조(범칙금의 납부) ①
<u>시장</u>
②
<u></u> <u>장</u>